

의안번호	2217188
의 퇴 인	박성훈의원
회 답 일	2026.5.12.
추계번호	26D12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 제2항(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 제2항(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 관련(안 제30조제2항)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 내 89개의 시·군·구임([참고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 이 중, 개정안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설

- 치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센터의 규모, 직원 수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지원 규모 또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¹⁾, 같은법 시행령²⁾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라 2022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설치
 - 동 센터는 연구원 출연금 및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이와는 별개로 한시적으로 '23년 5억원, '25년 3억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은 바 있음.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센터 운영 경비는 인건비 1억 5,200만원, 연구사업비 3,400만원 등 1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참고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4.2.27. 시행)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2] 시·도 연구원 내 인구정책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시·도명	기관명	인력구성	비고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 연구센터	1명 (센터장 1)	非인구 감소지역
부산연구원	인구전략 연구센터	4명 (센터장 1, 연구위원 1, 위촉연구원 2)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5명 (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인천연구원	인구정책연구단	1명 (도시사회연구부 소속, 겸직)	
경기연구원	인구영향 평가센터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전북연구원	인구전략실	14명 (실장 1, 연구위원 4, 책임연구원 9)	
전남연구원	인구전략 추진센터	2명 (센터장 1, 연구원 1)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10명 (센터장 1, 연구원 8, 기타 운영인력 1)	非인구 감소지역